

No. 43188

**Republic of Korea
and
Cambodia**

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for air services (with annex). Seoul, 10 April 2001

Entry into force: *10 May 2001,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*

Authentic texts: *English, Khmer and Korean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15 November 2006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Cambodge**

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royal du Cambodge relatif aux services aériens (avec annexe). Séoul, 10 avril 2001

Entrée en vigueur : *10 mai 2001, conformément à l'article 19*

Textes authentiques : *anglais, khmer et coréen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15 novembre 2006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(이하 “체약당사자”라 한다)는,

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,

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의 개실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 정 의

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상 달리 요청되지 아니하는 한,

가. “협약”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, 동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그리고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.

나. “항공당국”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, 캄보디아왕국의 경우에는 관방부 민간항공청, 또는 양국 모두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기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.

다. ‘지정항공사’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통해 지정하고,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.

라. 국가와 관련하여 “영역”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.

마. “항공업무”, “국제항공업무”, “항공사” 및 “비운수목적의 착륙”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이들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.

바. 항공기와 관련하여 “수송력”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 이용가능한 동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말한다.

사.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“수송력”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.

아. “교통량의 수송”이라 함은 여객·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.

자. “부속서”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부속서를 말한다.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,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.

제 2 조

권리의 부여

1.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.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“합의된 업무” 및 “특정노선”이라 한다.

2.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권리를 가진다.

가.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

나.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

다.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특정노선상의 지점에서의 여객·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와 하륙

3. 이 조 제2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·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항공사의 지정

1.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.
2.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들에게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.
3.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며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그 항공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건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4.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지정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,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.
5. 추송력이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,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되는 항공사는 그러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.

제 4 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

1.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